

방송3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오늘 정부는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앞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고, 오늘 국무회의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둘째,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셋째,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개편 필요성을 들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재의요구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끝.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 현 (02-2110-1410)
		담당자	사무관 권혁준 (02-2110-1415)

- 첫째,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 공사 또는 방송문화진흥회가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이 특정 이해관계나 사회세력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나, 개정안은 그동안 편향적 의견을 제시해왔던 방송 관련 단체들에 상당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
 -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임

- 둘째, 방송사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공사의 경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는 공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
 - 그러나 개정안은 편향성을 가진 방송 관련 단체들이 상당수의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직능 단체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 이사회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될 것임

- 셋째,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공사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공적 재원으로 충당하여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이사를 임명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에 맞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구성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국민 대표성이 없는 단체들이 이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게 되어 임명권이 제약되는 등 공사의 조직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에 흠결 초래

□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여 사추위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 사추위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구성 기준은 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그 대강의 내용이나 기준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사추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
- 이에 따라 사추위의 구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사추위를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할 위험 존재

□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민주적 교육발전 도모 등을 위한 중요 법률이고, 이사회 구성·선임절차, 사장 추천 절차의 변경은 그와 관련된 중요 사안임
- 그러므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개편 필요(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사 추천방식 변경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임